

『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6년 2월 25일

나. 발 의 자 : 양진오, 권기만, 김복자, 안장환, 안주찬
윤영철, 정근수, 정하영, 한성희 의원(9명)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2월 25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3월 4일

제20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양진오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의 출납 폐쇄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결산검사를 위한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를 6·7월에서 5·6월로 앞당겨 조정 하는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
-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조정하여 행정집행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시와 견제를 실시하고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 운영을 도모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제1차 정례회 집회 일자 조정(안 제4조 제1호)
 - 7월 7일 ⇒ **6월 2일**(단, 시행일 2017년 1월 1일)

○ 행정사무감사 시기 조정(안 제5조 제1항 및 제2항)

- 제2차 정례회 ⇒ 제1차 정례회

라. 참고사항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제44조,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54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류 시 건

□ 본 조례안은

○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를 현행 6·7월에서 5·6월로 앞당겨 조정하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조정하여 행정집행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감시와 견제를 실시하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코자 함.

□ 주요 내용은

- 제1차 정례회 집회 일자 조정(안 제4조 제1호)
 - 7월 7일 ⇒ 6월 2일(단, 시행일 2017년 1월 1일)
- 행정사무감사 시기 조정(안 제5조 제1항 및 제2항)
 - 제2차 정례회 ⇒ 제1차 정례회

□ 검토결과

○ 본 조례안은 「지방재정법」의 출납 폐쇄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결산검사를 위한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를 현행 6·7월에서 5·6월로 앞당겨 조정하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, 2017년도부터는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6월 2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,

-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조정함으로써 제2차 정례회에 집중되는 안건의 분산 효과, 감사 자료의 충분한 검토시간 제공 등 행정집행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
- 지난 1월 27일 전체의원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고,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